

「2023 공예주간」 공예문화 프로그램 기획 공모

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「2023 공예주간」에 함께 참여할 기획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.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공예문화를 보다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다양한 공간과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번 공모에 역량 있는 기업, 기관,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□ 행사개요

- 행사명 : 2023 공예주간(KOREA CRAFT WEEK 2023)
- 주최/주관 : 문화체육관광부 /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
- 행사기간 : 2023년 5월 19일(금) ~ 5월 28일(일), 총 10일간
- 행사장소 : 문화역서울284 및 전국, 온·오프라인
- 행사내용 : 전시, 마켓, 체험, 이벤트 등 공예 행사 집중 개최

□ 공모개요

- 공모명 : 2023 공예주간 공예문화 프로그램 기획 공모
- 공모분야 : 2023 공예주간 전시, 체험, 마켓, 교육, 포럼 등 기획 프로그램
- 접수기간 : 2022년 10월 24일(월) ~ 2022년 11월 25일(금) 24:00까지, 5주간
- 지원대상 : 2023 공예주간 기간 전시, 체험 마켓, 교육 등 공예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업, 기관, 단체(협회, 협동조합, 프로젝트 그룹 등 포함)
- 지원규모 : 총 355,000,000원(일금 삼억오천오백만 원)

구분	공모 내용	구분 (건당 지원 예산 최대 기준시)	선정규모 (최대 기준시)	총예산 (최대 기준시)
2023 공예주간 예산지원 프로그램	- 공예주간 기간 내 기업 및 기관, 프로젝트 그룹, 협회, 단체 등이 진행하는 전시, 체험,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	2,000 만원	3개	6,000 만원
	- 기관 및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제출 필수	1,500 만원	8개	12,000 만원
	- 프로젝트 그룹의 경우 고유번호증 제출	1,000 만원	12개	12,000 만원
	※ 개인 및 지자체 직접 지원 불가	500 만원	11개	5,500 만원
총 예산				35,500 만원

- ※ 지원예산은 2023년 국회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.
- ※ 1개 단체당 최대 1건 지원 가능, 중복 지원 불가.
- ※ 건당 지원 예산과 선정 규모는 심의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
- ※ 지원금은 e-나라도움(보조금관리시스템)을 통한 교부 및 사용 필수.

○ 제안 프로그램 유형

- 공예주간에 적합한 전시, 체험, 마켓 등 다양한 공예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제안
- ※ 제안 프로그램은 공예주간 기간 오프라인(대면)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, 온·오프라인 복합은 가능하나 온라인(비대면) 프로그램으로만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제외.

분 야	내 용
전시	전통 및 현대 공예를 기반으로 한 기획전시 운영
체험·교육	일반 지역 주민, 학생, 문화 소외계층 등 대상별 공예 체험 및 교육 운영
마켓	공예,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공예주간 기간 마켓 운영
기타	전통 및 현대 공예,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자유 제안

○ 가점 항목

구 분	공모 내용
①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	- 지자체 연계 행사 및 프로그램에 해당하거나, 지자체 운영 공공 시설 대관 협조 등을 받은 경우 가점 부여 * 지자체 :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전국 17개 광역시·도의 지방자치단체(시군구 포함) - 공문 제출 필수 ※ 추후 협조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 됐을 경우, 지원금 반납 가능
② KCDF 공예매개인력 양성 연계 프로그램	- 공예 매개인력 수료자 1인 필수 포함인 경우 가점 부여 (2018~2022) - 공예 매개인력 수료자의 경우 참여 비중이 최소 30% 이상이어야함 - 수료증 필수 첨부 ※ 공예 매개 인력 수료자는 공예주간 종료 시까지 필수 운영 인력으로 진행 해야 하며, 중도 포기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 가능
③ 2022 공예주간 올해의 프로그램, 인기 프로그램 선정 단체	- 2022 공예주간 올해의 프로그램 및 인기 프로그램 선정 단체의 경우 가점 부여

※ 가점은 위 항목별로 부여, 복수 해당 가능

※ 가점은 1차 서류심사 시에만 적용

○ 지원금 집행 및 정산

- e-나라도움(국고보조금시스템)을 통한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예정으로 관련 협조 필수
- 선정 시 e-나라도움 관련 사전 교육(2-3회) 실시 예정
- 사업 예산계획서에 따라 예산 집행
- 중간/결과정산 보고 및 e-나라도움(국고보조금시스템)을 통한 집행정산
- 정산실적보고서, 결과보고서 제출, 정보공시 필수

○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

- 예산 집행과 사업추진에 있어 아래 안내된 사용 범위(비목/세목, 비율)를 준수하여 보조금(국비) 예산계획서 작성
- 선정 후 심사 및 검토를 통해 사업 및 예산계획서 수정(3회 제한)을 요청할 수 있음
- ※ 자세한 내용은 공모 신청서 내 《예산계획서 작성 안내》 및 《예산편성지침》 참고
- ※ 지원금 예산편성 불가 항목
 - 내부 인력 인건비,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전화요금, 공과금, 업무추진비, 국내여비 등 직접경비 이외의 운영비, 기타 해당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 경비

구분	비목	사용 범위
보조금 (국비)	인건비	(일용임금) 전시장 지킴이, 단기 인력비 등 ('23년 최저시급 이상 편성) ※ '23년 최저시급 9,620원
	일반수용비	(전문가 활용비) 내부 인력, 일용직 외 사업 관련 전문가 개인 사례비
		(강사료) 사업에 필요한 강의 진행 시 내부 인력 외 개인 사례비
		(원고료) 원고료, 편집, 교정 등에 대한 내부 인력 외 개인 사례비
		(인쇄 및 제작비) 홍보용 물품 제작비 일체(도록, 리플렛, 유인물 등의 인쇄비, 홍보용 물품 제작비 및 디자인비 등)
	(소모품 및 재료비)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구입비	
	임차료	임대차 계약을 통한 장소, 장비, 물품 등 임차비
공공요금 및 제세	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우편료, 택배발송, 퀵서비스 등 ※ 통신비 지원 불가	
일반용역비	전문성이 필요한 홍보 마케팅, 디자인, 사진, 영상 촬영 등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	

※ 2023 공예주간 회계감사는 공진원에서 일괄 진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.

○ 확인 사항

-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주체 확인이 가능해야 함.
※ (예시) 프로젝트 그룹으로 공모 지원하나, 개별 구성원의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증빙 서류로 임의 제출하는 경우 심사 제외 →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제출 필수
- 프로그램 선정은 신규 프로그램 혹은 기존 운영 프로그램에서 2023 공예주간 연계로 재창작되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.
- 전국 단위의 행사로 지역에 따른 분배 및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.
- 지원금액은 건별 최대 지원 가능 금액으로 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.
- 공예주간 공예문화 프로그램으로 3회 이상 지원받은 단체의 경우 공모 신청은 가능하나, 선정 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함.

□ 신청 및 접수 안내

- 접수 기간 : 2022년 10월 24일(월) ~ 11월 25일(금) 24:00까지 / 총 5주간
- 접수방법 : 온라인 사업신청 홈페이지 접수 ※ 오프라인 접수 불가
 -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 공모 홈페이지(<http://www.kcdf.kr/businessapplication>)
 - 지정 양식(신청서) 작성 후 공예주간 사업 공모페이지에 신청



- ※ 우편 및 방문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.
- ※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, 마감일 및 마감 시간 임박 시 높은 접속량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서류 준비와 신청을 권고드립니다.
- ※ 신청서류는 접수 마감일 마감시간(2022.11.25.(금) 24시)까지 온라인 접수된 신청서만 인정. 별도 예외 없음

○ 제출 시 필수 첨부서류

① 신청자(단체) 자격 증명서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고유번호증)

- ※ 지자체 및 개인 지원 불가
- ※ 증빙 서류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주체 확인이 가능해야 함.
- ※ (예시) 프로젝트 그룹으로 공모 지원하나, 개별 구성원의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심사 제외 → 고유번호증 사전 발급 및 제출 필수

- ② 사업신청서 (지정 양식)
- ③ 사업계획서 (지정 양식)
- ④ 신청기관(단체) 현황 (지정 양식)
- ⑤ 총괄관리자(PM) 이력 (지정 양식)
- ⑥ 개인정보동의서 (지정 양식)
- ⑦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서약서 (지정 양식)
- ⑧ 예산계획서 (지정 양식)

※ 지정 양식 및 제출 서류 공모 신청서 참조

□ 선정절차 및 방법

○ 선정 절차 및 일정

1단계	▶	2단계	▶	3단계	▶	4단계	▶	5단계
공고기간		접수기간		1차 서류심사		2차 발표심사		결과발표
'22.10.17. ~ '22.11.25.		'22.10.24. ~ '22.11.25.		'22.12.2. ~ '22.12.8.		'22.12.14. ~ '22.12.16.		'22.12.21. (예정)

※ 주최 측 사정 및 접수 건에 따라 심사 및 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.

○ 선정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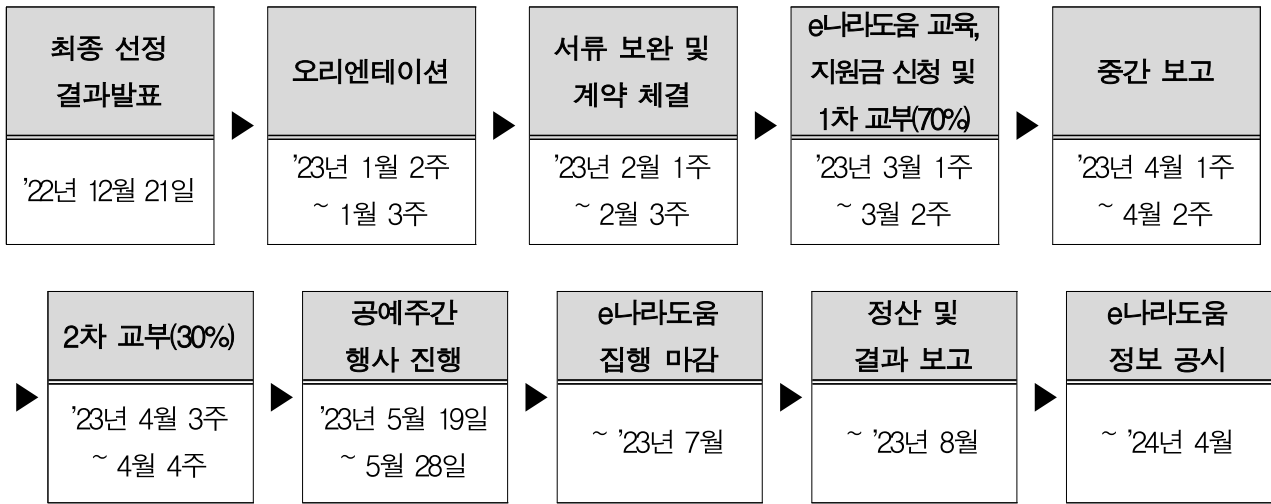
- 심사위원 : 유관 분야 외부 전문가 5인 내외 평가위원회 구성
- 심사 방법 :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
 - 1차 서류심사 : 사업 및 예산계획서 (지정 양식) 서류 평가
 - 2차 발표심사 : PPT (지정 양식)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
- 심사 중 예산 범위 내 최종 보조금(국비) 규모 결정
- 공진원 내부 검토 후 사업 구성 및 예산 등 내용 보완 요청 가능

○ 심사 기준

구 분	주요 내용	점 수
사업 이해도 및 타당성	- 공예주간 및 공예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및 부합성 - 공예주간 및 공예문화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타당성 - 사업 예산운용 계획의 현실성 - 공예주간 및 공예문화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모객을 위한 전략과 방법	30
프로그램 기획력	- 프로그램 기획력 및 콘텐츠 참신성 및 차별성 - 운영 장소, 일정, 참여 인력 등 기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- 운영 주체의 유관 분야 경력과 실적 -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업무 배분	40
사업성과 기대도	- 공예주간 확산 기여도 및 기대도 - 문화소외계층(지역) 대상 운영을 통한 향유 기회 확대 - 홍보 계획 및 기대효과 실현 가능성 - 지역 예술가/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 내 파급력	30
합계		100

□ 추진 일정

○ 사업추진 일정 (예정)



※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단계별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.

※ 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연도(23.1.1.~23.12.31.) 종료 후 4개월 이내 정보 공시 필요하며, 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될 수 있음.

※ 단계별 보조금(국비) 규모에 따라 단계별 해당 여부가 상이할 수 있음.

□ 유의 사항

○ 신청 시 유의 사항

- 접수 마감일, 마감 시간까지 접수된 내용만 인정합니다.
- 우편 및 방문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.
- 지정된 신청 양식이 아닐 경우, 접수된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허위기재, 기재 착오, 필수서류 미제출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.
- 총사업비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, 과도한 보조금 책정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중앙부처, 지자체, 기타 공공기관, 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「공예관광산업 육성 사업」(2023년 기준)에 선정 및 참여하는 경우, 동일 프로젝트로는 중복 선정이 불가하며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본 공모 신청 과정에서 주관처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.
- 본 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, 공모

신청에 따른 일체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합니다.

- 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 등 주관처 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이 확인될 경우, 해당 단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적격 단체가 없는 경우,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(재)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성폭력 피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,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
- 위 각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

○ 선정 후 유의 사항

- 심사 및 검토를 통해 사업 및 예산계획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선정 단체는 최종 승인된 사업 및 예산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.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주관처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, 사업 진행 중이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선정 단체에 있습니다.
- 선정 후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초기 제안한 사업 규모와 비교해 현저히 축소됐을 시, 선정이 취소되거나 보조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.
- 선정 단체는 홍보물(포스터, 도록, 영상 등) 제작 시 주최, 주관 등 후원 명칭 사용 지침에 따라야 하며 주관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.
- 선정 단체는 주관처가 진행하는 현장 모니터링, 관람객 만족도 조사 등의

- 과업에 협조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선정 단체는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관처의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. 정당한 요청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할 경우, 또는 과업 수행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주관처는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 단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연관된 금전적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 - 보조금은 총 2회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입니다. (1차 : 70%, 2차 : 30%)
 - 선정 단체는 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’ 및 ‘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 - 향후 재해 및 감염병 대응 단계에 따라 질병 대응 및 예방을 위해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, 단계에 따라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 - 기타 본 공고 및 추후 안내 사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적시되지 않은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상호 협의를 진행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.

□ 문의처

-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주간 사무국
 - 전화번호 : 02-398-7952 / 이메일 : craftweek@kcdf.kr
 - 문의 가능 시간 : 평일 10:00~17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- 전화 문의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.
-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은 「산업안전보건법 고객 응대 근로 조치」에 근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